#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2. 3. 23.(수)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0차, 제11차, 제1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경북 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관한 건 (2022-13-045)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헌 방송정책기획과장

-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지역의 TV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에 발생한 산불 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상기에 대해 「방송법」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수신료 면제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관련 법 령은 「방송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2조에 따라 방통위가 지정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거 면제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 총 13차례 수신료를 면제했습니다. 특히 산불의 경우는 2000년 4월에 5개월 동안 그리고 2004년 3월에 6개월, 2019년 4월에 6개월 수신료를 면제한 바 있 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먼저 면제 필요성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재난지역 의 피해주민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면제대상입니다. 특별재난 지역의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를 면제대상으로 하 되, 다만 한울원전이 대납하고 있는 울진군 가정용 수상기는 면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제기간입니다. 과거 강원도 산불 수신료 면제사례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면제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한국방송공사에 공문을 송부하고 바로 면제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효재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이번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6개월 면제안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역대 최장 213시간 산불로 인해서 울진, 삼척에서만 여의도 넓이의 약 70배가 넘는 임야가 손실되었고, 주택 319채 등 전체 피해액이 최소 1,6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시 면제금액이 비록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 현 상임위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에게 수신료 면제는 작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6개월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 안형환 부위원장

- 먼저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런 대형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피해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당연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후 조속한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는 재난방송 등 위원회 재난 대비 정책 등이 부족하거나 소홀함이 없는지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작은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모든 힘과 뜻을 모아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나.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2-13-046)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헌 방송정책기획과장

-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_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_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_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등의 보수, 업무 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관계 법률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공포 되어서 개정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작년 10월 19일 법률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올해 1월 12일 일부개정령(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개위 규개심사 등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입니다. 보수,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내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수와 각종 수당은 종류별로 구분하고,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과 일자, 대상인원, 집행금액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안 중 변경사항입니다. 법제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등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공개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법령상의 표현 등을 명확하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후 법제처 심사 그리고 4월에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관보게재를 거쳐 4월 20일부터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별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효재 상임위원

-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 EBS, 방문진은 수신료, 방발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 임원들의 보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안형환 부위원장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영방송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영방송 관계자분들도 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서 정보공개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22-13-047)

#### O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 가에 [별지]와 같이 조건을 수정·통합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케이씨 티브이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사업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개요입니다. 과기정통부 심사결과 점수를 환산 시, 대상사업자 모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 동의 기본계획」에 따라 약식심사위원회를 방송·법률·회계 분야 총 3인을 구성하여 3월 10일 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17년도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및 지역채널 운영·투자 계획 등 공적책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사업계획서 및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 등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등의 실현가능성,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필요성 등에 부합하는지를 중점 검토하여 의견 및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 울러, 지역채널 운영 및 투자 등 공적 책임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이행의지 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총평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요청한 ㈜케이씨티브이제주 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일부를 수정·통합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제 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기정통부 조건(안) 수정 및 통합은 크게 2가지 사안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경영투명성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3개 법인

공통입니다. 조건 수정입니다. 대상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검토 결과, 이익 단체 추천 위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시청자 대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시청자를 대변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해당 조건을 수정하여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방송권역이 한정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청자위원회와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건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투명성 관련은 3개 법인 공통입니다. 조건 통합/수정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 재허가 조건(안) 중 경영투명성 관련으로 사업자별로 부가된 개별조건은 3개 법인에 부가된 조건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개별 조건을 통합하여 공통조건으로 부가하고 경영투명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중요한 경영 사항' 예시를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체결, 이사와의 거래, 이사 보수 결정 등으로 구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 수정(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사외이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케이씨 티브이제주방송과 남인천방송의 권고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의 이 사진은 특수관계자 및 주주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등 경영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특수관계자 및 주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제 도입 등 경 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인천방송㈜의 사외이사 운영 계획에는 전체 이사의 1/3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이사 총 6명 중 1명만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 중입니다.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사외이사를 추가 선 임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인천방 송㈜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행 및 관련 법 규정 준수 내용입니다. 남인천방송㈜은 지역채널 투자 계획 미이행 등 총 21건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 지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 및 기술기준 준수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는 등 향후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케이블TV광주방송에 대해서는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케이블TV광주 방송은 미래 투자에 대비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내 유 보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과기정통부의 조건 수정·통합 및 권고사항 등은 방송 권역의 한정 등으로 지역 중소유선방송사의 경영여건이 이전에 비해 어려운 점을 고려하 더라도, 지역방송사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점에서 적 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재허가 사전동의 조건 및 권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효재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종합의견에서 결론 낸 것과 같이 재허가 경영진단 다 고려해서 한 것이 정당하다는 큰 틀에서 과기

정통부가 이의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 ○ 신숭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다면 이것을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똑같은 심사를 과기정통부로 더 받고 다시 한번 방통위로부터 받는 것이 되는데 지적사항들을 보면 과기정통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희 방통위에서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이 원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해야 한다면 기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낭비요소가 많으니까 행정서비스라는 입장에서 우리도 한번 그런 제도개선을 사무처가 과기정통부와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 ○ 신숭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에서 SO 3개사의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니까 3개사의 시청자 위원회 모두 이익단체 추천위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시청자 대표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사무처 안과 같이 시청자를 대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수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안형환 부위원장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된 문제이긴 하지만 과기정통 부의 재허가 심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전동의가 수범자들에게는 이중의 심사과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과기정통부와 상의해 왔던 내용 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수범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22-13-048)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배춘환 방송기반총괄과장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 에이를 각각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재허가하고,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별지]와 같이 부가하며, 재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입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경과, <4> 대상 사업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 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 하여 관련 전문가 1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심사위원회를 운영 하며, 법률요건 심사, 평가, 신청법인 의견청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6>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먼저 법률요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재허가 신청법인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결격사유) 및 제13조(소유제한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심사평가 결과 재허가를 신청한 각 사업자는 심사배점 만점 중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을 획득하여 모두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사업자별 세부 심사결과 제이티비씨미디어컴㈜은 82.546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은 81.187점, ㈜미디어렙에이는 81.277점을 얻었습니다. <7> 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 의견입니다.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 으나 필요한 조건 등을 부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중소기업 광고주의 실질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종편PP 미디어렙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조사, 연구 수행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청법인별 심사의견입니다. 제이티비씨미디어컴㈜에 대해서는 시장전망을 기초로 한 합리 적인 경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 저해 우려가 있는 사외이사 운영 방안 개선, 임직원 행동강령수칙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한 규정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방송광고 및 미디어렙에 대한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8>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재허가 여부입니다. 심사 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허가 신청법인 모두 재허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고 이행결과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나>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입니다. 먼저 공통 재허가 조건입니다. 방송광고판매를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 최다주주인 종편방송사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것, 소유제한 위반 방지대책을 제출할 것, 중소기업 광고주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출할 것,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및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통 권고사항은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간 공동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경력직 채용뿐만 아니라, 신규채용과 수습 등맡은 바 균형적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개별 재허가 조건은 ㈜티브이조선미디어렠, ㈜미디 어렙에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인 임명 등 감사위원회의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내용을 임직원 행동수칙 등에 반영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제출할 것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3개 재허가 신청법인에 대해 3월 중으로 재허가장을 교부하고 하반기에 진행되는 ㈜엠비엔미디어렙의 재허가 심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별지]와 [붙임]의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안형환 부위원장

- 우선 심사위원분들과 사무처에서 이번 재허가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해당 법인들은 향후 부여된 재허가 조건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향후 이행실적 제출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님들의 정책 건의와 같이 변화된 경제 및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3월 30일에 개최하되,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 23분 폐회 】